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08. 5. 18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사용·대부료 인상에 대한 감액 조정을 확대
-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 주거용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에 대한 기준 완화 및
수의매각 허용

3.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을 “주거용으로”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를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 5. (생략) ②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08. 4. 18 공포)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됨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별)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별) ----- ----- ----- ----- ----- -----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08. 4.18 공포)으로 사용·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되었는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임 -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 ----- -----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감안

[illegible]

참 고 자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